

재단법인
호원

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
공모제 교장 선발 공고



재단법인 호원이 유지·경영하는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공모제 교장을
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12일

재단법인 호원 이사장(직인생략)

1 목 적

가.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

공모제를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.

나. 유능한 교장 임용

탁월한 역량과 전문성 및 리더십 능력을 갖춘 교장을 임용할 기회를 얻는다.

다. 학교 경영의 다양화

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
기반을 마련한다.

라.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강화

임용부터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력을 전제하므로, 이후 학교 운영에서도 소
통 중심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다.

마. 지역 특성과 학교의 여건 반영

지역사회나 학교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교장
을 임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.

2 학교 현황 기준일: 2025. 4. 1.

가. 교직원 현황

직위	교장실	교무실				행정실		계
	교장	교감.담임 교-부장	담임교사 중-부장	담임교사	시간강사	행정실장	행정직원	
인원	1	1	1	6	9	1	2	21

나. 학생현황

학년	중			고			계
	1학년	2학년	3학년	1학년	2학년	3학년	
학급수	2학급	2학급	-	2학급	2학급	-	8학급
학생수 (야간)	60명 (30명)	51명 (21명)	-	61명 (30명)	54명 (23명)	-	225명 (104명)

※ 1년 3학기제 교육과정으로 동시에 2개의 학년만 존재함.

다. 학교 시설현황

1층 (본관)						
교실	전산실	행정실	휴게실	화장실	창고	
2	1	1	1	2	2	

2층 (본관 및 별관)							
교실	강당	교무실	교장실	상담실	방송실	화장실	창고
2	1	1	1	1	1	2	1

3층 (본관 및 별관)							
음악실	미술실	학생회실	가사실	창고	화장실	탕비실	옥상
1	1	1	1	1	1	1	2

4층 (본관 및 별관)		
옥상	창고	물탱크실
1	1	1

라. 기타 시설현황

1층 (별관)	
작은도서관 1	• 재단법인 호원이 군산시립도서관의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,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3

지원 자격

가. 기본자격 ※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.

-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가능한 자 *학생 평균 65세
- 임용 예정일(2025. 7. 1. 부터)을 기준으로 2년간(2028. 2. 29. 까지) 재임 가능한 자
- 본 공고에서 임용하는 공모제 교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
* 「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복무규정」 제26조(정년)

나. 개별자격 ※반드시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.

- 중등학교(교장)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
- 중등학교(교감)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- 중등학교(1급)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
다. 우대자격

- 중등학교(교장)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
-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※야간학급 운영의 특성에 따라 우대

라. 연수자격 ※중등학교(교장) 자격증 미소지자에 한함.
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에 의한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(2026. 3. 1. 기준)

『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복무규정』 제26조(정년)

-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.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,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 다만, 이사장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해있는 학년도를 마치는 시점까지 교원의 퇴직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학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학교장의 정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『교육공무원법』 제47조(정년)

-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
- ② 교육공무원(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,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『 3. 지원 자격에 따라 지원 가능한 출생일 안내 』

출생일	교장 자격증 소지자	교장 자격증 미소지자	비 고
~	지원 불가	지원 불가	※ 최종 합격 또는 임용 이후에도 중등학교(교장)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가 불가능한 경우, 그 사유가 정년, 결격사유, 추천 대상 여부 등 어떠한 이유이든 관계없이, 이사장은 해당자의 최종 합격을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, 임용된 경우에도 자격 미달을 사유로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.
1962. 2. 28.			
1962. 3. 1.			
~			
1965. 2. 28.	지원 가능	지원 가능	
1965. 3. 1.			
~			

1) 중등학교(교장) 자격증 소지 : 1962년 3월 1일 및 이후 출생자

예) 출생일이 1962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: 본교 복무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2월 사이에 있으므로 2027년 2월 28일에 당연퇴직 대상이기에 「기본자격: 2년간 재임이 가능한 자」에 해당하지 않음.

예) 출생일이 1962년 3월 1일 및 이후인 경우 : 본교 복무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므로 2027년 8월 31일에 당연퇴직 대상이나, 「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복무규정」 제26조(정년) 제1항의 “정년에 이른 날이 속해있는 학년도를 마치는 시점까지 교원의 퇴직을 유예할 수 있다.” 는 조항을 적용받기에 2028년 2월 29일에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「기본자격: 2년간 재임이 가능한 자」에 해당함.

2) 중등학교(교장) 자격증 미소지 : 1965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

① 교장(감) 자격연수는 올해(2025년) 4분기에 익년(2026년) 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함.

② 올해(2025년) 추천 대상자는 『교육공무원법』 제47조에 의한 정년 잔여기간이 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.

③ 제2항에 따라 『교육공무원법』 제47조에서 정한 정년 퇴직일이 2027년 2월 28일인 경우 추천이 불가하며,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정년 퇴직일이 2027년 8월 31일인 경우 추천 가능

예) 출생일이 1965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

④ 정년 퇴직일이 2027년 2월 28일이므로 「연수자격 :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」에 해당하지 않음.

예) 출생일이 1965년 3월 1일 및 이후인 경우

⑤ 정년 퇴직일이 2027년 8월 31일이므로 「연수자격 :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」에 해당함.

가.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(승진 임용의 제한)

-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.
1. 징계의결 요구·징계처분·직위해제 또는 휴직(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중에 있는 경우
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[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,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상습폭행,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]이 지나지 않은 경우
 - 가. 강등·정직: 18개월
 - 나. 감봉: 12개월
 - 다. 견책: 6개월
-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, 근신·영창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(前)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.
-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(殘餘)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할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.
- ⑤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·포장·모범공무원포상·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.

나. 사립학교법 제54조의3(임명의 제한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.
1.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2.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3.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. 다만,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배우자
 2.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
-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
- ⑥ 이 법에 따른 교원(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), 국립학교·공립학교의 교원(「교육

공무원법」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), 「유아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(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금품수수 행위
2.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(非違) 행위
3.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
-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다.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(전직 등의 제한)

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7호의 "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
2.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
3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4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

라.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(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)

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1.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. 다만,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.

- 가. 강등: 9년
- 나. 정직: 7년
- 다. 감봉: 5년
- 라. 견책: 3년

2. 교원소청심사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

3.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

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1.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. 다만,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.

2. 교원소청심사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

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마.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되는 사항

단, 교원 4대 비위자(금품·향응수수, 상습폭행, 성폭행등 *성 관련 비위, 성적조작)는 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배제

* 성 관련 비위: 성희롱, 성추행, 간통, 불륜 등 포함.

바.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『교육공무원법』 제10조의4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『국가공무원법』 제33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사. 초등학교(교장), 중등학교(교장) 자격증 소지자 간의 **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**

아. 2022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포함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·처분을 받은 자 지원 불가

자.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 『교육공무원법』 제10조의3(채용의 제한), 『교육공무원임용령』 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- 『사립학교법』 제54조의3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, 『아동복지법』 제29조의3(취업제한)
-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56조(취업제한) 등

5 근무 조건

가. 근무지 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로 9,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

나. 임용기간 : 2025. 7. 1. ~ 2028. 2. 29. (개방형 / 2년 이내, 1회 중임 가능)

- ※ 임용 예정일은 2025년 7월 1일로 한다. 다만, 법인, 학교 및 교장 자격연수에 따라 2026년 3월 1일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.

다. 근무조건 : 학교의 교육 및 교무를 관리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 편성 및 시행

- ※ 교원인사 상황에 따라 소지한 교원자격증 해당 과목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.

라. 보수 : 당해 학교 보수규정에 의함

- ※ 『공무원보수규정』 별표11(교원 등의 봉급표)에 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20호봉 이내에서 기본 호봉을 책정함. (임용 전 교육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음)
- ※ 기본급을 제외한 보수는 당해 학교 보수규정 의함. (교육공무원 수당과 같지 않음)

6 선발 일정

구분	일자(기간)	비고
선발공고 기간	2025. 5. 12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해 학교 홈페이지 · 전북도교육청, 군산교육지원청 ※원서교부: 공고문 내 첨부
서류심사 접수	2025. 5. 14.(수) ~ 2025. 5. 20.(화) (총 기간 7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장 및 우편(등기)접수 ※E-Mail접수 불가 ※등기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· 마감일 16시까지

- ※ 선발 일정은 법인 및 당해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시 정정공고 가능.
- ※ 서류심사 및 최종 합격자 결과 발표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.
- ※ 서류심사 이후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.

7

서류심사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 기간: 2025년 5월 14일(수) ~ 5월 20일(화) ※ 접수 마감일 16:00까지

※ 현장접수: 접수기간 중 09:00 ~ 17:00 접수 가능 (단, 5월 15일(목) 휴교로 인한 접수 불가)

※ 우편(등기)접수: 접수기간 중 상시 (단, 접수 마감일 16:00까지 도착한 우편(등기)에 한함)

나. 접수 장소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로 9,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(1층)

※ 세부적인 제출 서류는 아래 ‘8. 제출 서류’ 참조

8

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대상 및 규격
제출 서류	1. 교장공모지원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1] 학교 서식 · 반명함판사진 3x4cm (컬러사진 삼입 또는 부착) (최근 6개월 이내, 탈모, 정면 상반신)
	2.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, 근거자료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2] 학교 서식
	3. 자기소개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3] 학교 서식
	4. 학교경영계획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4] 학교 서식
	5. 자료공개동의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5] 학교 서식
	6. 서약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6] 학교 서식
	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붙임7] 학교 서식
	8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NEIS 출력
	9. 중등 자격증 사본 1부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등학교(교장), 중등학교(교감) 중등학교 정교사(1급)

※ 제출 서류 접수 방법

인편 또는 등기로 우송 (마감일 마감 시각 도착분에 한함)

- 본 공고는 법인 또는 당해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**변경 사항은 학력인정 균산평화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**
- 지원자는 공고문에 안내된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 또한 **접수 이후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**
- 지원자는 **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**하여야 하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
- 제출서류는 자필(워드 가능)로 작성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, 지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
-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 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기록함
- 학력, 경력, 자격 등에 대한 제출(증명)서류 미제출 시 허위 작성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처리함
- 제출(증명)서류를 허위(또는 위조)로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함
- 서류심사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 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
- 제출 서류의 표절, 심사 및 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이사장은 즉시 해당 학교의 교장 공모 지정을 철회 후 연루자에 대한 징계, 수사 의뢰 등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함
- 최종 합격 후에도 본 공고의 지원자격, 지원제한, 결격사유 및 교장 자격연수의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합격을 취소함
- 최종 합격 후 포기자, 채용 후 즉시 퇴직(1개월 내) 및 기타 불합격 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이사장은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
- 적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 **전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**
- 심사일시 및 단계별 심사 대상자는 서류심사 마감 후 기재된 연락처로 추후 개별 통보함
- 지원자는 직무 외의 행위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 풍토 조성에 협조
-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 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
- 법인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기재된 연락처로 **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**
- 접수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함
- 1차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이사장은 해당 학교의 교장 공모 지정을 철회함
- 모든 사항은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되, 기타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 및 당해 학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.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재단법인 호원의 결정을 우선으로 함.
-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.

가.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peace.hs.kr>

나. 문의 사항 : 063-462-2318 (담당자: 행정실장 김성철)

- 붙임. 1. 교장 공모 지원서 1부.
2.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1부.
3. 자기소개서 1부.
4. 학교경영계획서 1부.
5. 자료공개동의서 1부.
6. 서약서 1부.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끝.